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(조승래의원·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4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조승래・이인선・강선우

정을호 • 박성훈 • 김기웅

장동혁 • 이정문 • 우재준

박충권 • 박상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, 의료,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.

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,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.

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인공지능,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인공지능제품·인공지능 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- 라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해당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,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4조).
- 마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,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 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함(안 제5조).
- 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인공지능의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표준의 제정 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사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해외 전문인력의 확

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아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 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 등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인공지능"이란 학습, 추론, 지각, 판단,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.
- 2. "인공지능기술"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.
- 3. "인공지능산업"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(이하 "인공지능제품"이라 한다)을 개발·제조·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(이하 "인공지능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4. "인공지능사업자"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- 5. "인공지능사회"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·경제, 사회·문화,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.
- 6. "인공지능윤리"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, 국민의 권익과 생명·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, 개발, 보급,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.
- 제3조(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)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인공지능제품·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국민의 생명·안전·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 한할 수 있다.

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

제4조(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 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

- 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
- 2.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- 3.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관련된 법·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
- 4.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에 관한 사항
- 5.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·노동·경제·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

응하여야 한다.

- ⑤ 기본계획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 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.
-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인공지능정책센터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의 구현,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에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
 - 2.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 개발의 지원
 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
 - 4.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확산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·경제·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분석

- 5.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,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(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적인 계산 또는 풀이 절차·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시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·교육·인식개선·홍보
- 6.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개발·활용 과정에서 국민안전과 인 권보호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조사·분석
- 7.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, 미래예측 및 법·제도의 조사·연구
- 8. 다른 법령에서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인공지능정 책센터에 위탁한 사업
- 9.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-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④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

제6조(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

-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동향·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
- 2.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, 시험 및 평가
- 3. 개발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
- 4.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
- 5.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
- 6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·조사와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인공지능기술의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 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
- 2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 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
- 3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
- 4.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1조제2 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 발 및 보급 사업

- 5.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 ·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
- 6.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, 올바른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
- 7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·이용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,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수 있다.
- 제7조(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,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에 사용되는 데이터(데이터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하며, 이하 "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"라 한다),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, 한국산업표준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1.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

- 2.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 · 연구개발
- 3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 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·강화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)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·수집·관리 및 유통 ·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·수집·관리 및 유통·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제작, 생산, 수집,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・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(이하 "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

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 •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(이하 "통합제공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 •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,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,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·관리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

- 제9조(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·활용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·개발 성과의 확산
 - 2.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・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
 -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(이하 "중소기업등"이라 한다)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관련 교육 지원

- 4.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
- 5.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창업의 활성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 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.
 - 1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
 - 2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에 관한 사업
 - 3.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 화 지워
 - 4.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
 - 5.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
 - 6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육성
 - 7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.
- 제11조(인공지능 융합의 촉진) 국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

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제도개선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 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·제도의 연구,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3조(전문인력의 확보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·연구기관·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·분석
 - 2.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
 - 3.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
 - 4.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 의 국내 유치 지위

- 5.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
- 6.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4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) ① 정부는 인공지능·인공 지능기술의 개발,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 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·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
 - 2.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 · 분석 및 제공
 - 3.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,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 동 연구·개발 및 국제표준화
 - 4.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
 - 5.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
 - 6.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·유통 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
 - 7.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
 - 8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.

- 제15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 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·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단체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 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⑤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16조(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) ① 국가는 기본 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·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하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·수립·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를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·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

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·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
 - 2. 제8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·수집·관리 및 유통·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·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
 - 3.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및 관리
 - 4.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5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
- 제1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.

제5장 벌칙

- 제20조(과태료) 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